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편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기존 3단계였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총 5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11. 1일)
3. 이에 따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적용하오니** 변경된 내용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일부터 적용**)

<주요 내용>

가. 중점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양점)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1.13~)

나. 일반관리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m²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 모임 및 행사

○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동창회, 동문회, 아유회, 동호회, 워크숍,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라.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 기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국공립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공문 및 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주무관 **박혜수** 과장 전결 2020.11.6.
니성화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1305 (2020. 11. 6.)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oyeah5@motie.go.kr / 대국민 공개